

특집

남북 경험의 법적·제도적 장치 점검

남북 경험의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의 필요성과 방향 · 장명봉

남북투자보장협정 · 제성호

이중과세방지협정 · 문준조

신변안전보장협정 · 백학순

남북 경협을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의 필요성과 방향

장명봉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남북 경협을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의 필요성

1988년 10월 남한 정부의 이른바 '對북한 경제 개방 조치'에 따라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대해 왔다. 작년에 북한과의 교역액이 3억 달러를 넘어 북한의 3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서 남한은 북한에게 교역의 내용 면에서 연평균 1억 3,000만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게 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 주고 있다. 남북 교역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남북간 상호 실리와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면서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분단 50년만에 이루어진 민간 차원의 대규모 인적 교류로서, '국민의 정부'에서 정경 분리 정책에 입각한 남북 경협 활성화 노력의 결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사

를 계기로 남북간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남북 관계가 서로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왔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여나가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경협은 현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대결 논리와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은 남북간의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만, 남북 경협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 잠수정의 침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받아왔다. 최근의 한 예로,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관광객을 북한 안내원과의 대화를 빌미로 한 억류 조치는 결국 관광 사업의 중단을 초래함은 물론 남북 경협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금년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도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남북 경협 불안정이 남북 관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법제의 현황

남북간의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15조)고 규정하여 남북 경협을 민족 내부 교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을 실현해나갈 것을 합의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각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한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간의 인적 왕래·주민 접촉·교역·협력 사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남한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 1990년 8월 1일 시행: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간의 인적 왕래·주민 접촉·교역·협력 사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남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같은 해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을 제정하여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이후 「남북교류협력법」의 운영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남북한 교역 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 교역 물품 통관 규정」, 「국내 기업 및 경제 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 지침」 등의 각종 고시 내지 지침을 통하여 남북 경협

한편, 북한도 90년대에 들어서서 대외 경제 개방을 표방하면서 1992년 4월 9일의 헌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제16조)과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기업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 장려(제37조)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외국인투자법」(1992년 10월 5일)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법들을 제정하고, 1984년의 「합영법」을 개정하여(1994년 1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생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도 90년대에 들어서서 대외 경제 개방을 표방하면서 1992년 4월 9일의 헌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제16조)과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기업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 장려(제37조)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외국인투자법」(1992년 10월 5일)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법들을 제정하고, 1984년의 「합영법」을 개정하여(1994년 1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생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북한은 이에 따라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즉,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투자 당사자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과 함께 북한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남북 경협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한 진출 대상을 남한 기업

과 투자자들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법제의 보완 방향

이같이 남북한은 남북 경협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에서 보듯이 남북 경협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북 경협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에 관한 검토와 동시에 그 보완·개선이 요청된다. 이는 남북 경협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나아가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몇가지 면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당국 간 합의를 요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첫째, 남한의 對북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요청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 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국유화 또는 수용 금지에 관한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제19조). 그러나 이 규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국유화의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달고 있다. 이것은 대북 투자에 대한 북한의 국유화 위협으로부터 남한 기업의 충분한 보호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남북한은 대북 투자 보호를 위하

여 이른바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국유화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가운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과의 세금 협정과 효력 관계에서 하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 세금법의 적용 범위에는 '공화국 영역 내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영역 밖 거주 조선 동포'를 포함시킴으로써(제6조), 대북 투자에 남한 기업도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남북간 이른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협정은 북한의 세금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 북한의 세금법은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인의 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간 체결한 세금 관련 협정에서, 북한세금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는 경우 그 협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이 경우 남북한간의 세금 관련 합의를 국가간의 협정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협정으로 보지 않을 경우 남북간 조세와 관련하여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세금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남북한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되, 자의적

남북한이 경험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남북 경험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남한의 대북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요청된다. 즉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국유화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북 투자 남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한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되,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북한의 세금법에 우선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남북 경험의 증대로 남북 주민의 교류 확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 왕래 인원 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

적용의 가능성이 큰 북한의 세금법과의 효력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즉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북한의 세금법에 우선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대북 투자 남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 경험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남북 주민의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남북 왕래 인원 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남북 경험의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이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연관되어 발생한 점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한 제도적 보장은 시급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 안전 문제를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 사이에 합의할 사안이라 하여 남북한 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을 계기로 남북 왕래 인원 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당국간

남북 경협은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남한이 대북 경협을 위해 취해야 할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은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서 남북 관계 내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법제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법체계 상의 정비가 요청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법」은 그야말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 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의 절차가 번잡하고, 실제로 남북 경협의 경우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을 위한 절차와 제도에 민간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하며, 남북 교역 절차도 간소화되어야 한다.

제도적 보장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방북 인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장 장치는 사업자간 차원보다 남북 당국간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 경협의 안정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나아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남북 경협을 위한 남북한의 법제 보완 방안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남북 경협은 아직도 초보적인 교역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남북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란 한계를 보여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 정책’과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뢰성 결여, 잠수정 침투 사건, 대포동1호 로켓 발사, 관광객 억류 등의 돌발 악재로 말미암

아 남북 경협은 원점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남북 경협의 항시적인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남북 교류 협력의 파행 내지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남한이 대북 경협을 위해 취하여야 할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개괄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정됨으로써, 기존 법 질서와의 이질성 내지 모순성의 소지를 안게 되어 국내 입법체계 상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서 남북 관계 내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법제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법체계 상의 정비가 요청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법적 성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전향적 자세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법」은 그야말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 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간의 모든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간의 접촉과 관련된

행위를 '창구단일화론'에 의거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하에 둠으로써,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판단에서 자의적 결정의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는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 당국의 규제 일변도의 규정은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상응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의 절차가 번잡하고, 실제로 남북 경험의 경우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경험을 위한 절차와 제도에 민간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하며, 남북 교역 절차도 간소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민간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경험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다음 북한도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래 경직된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남북 경험이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남북 경험과 관련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컨대, 공동 조성 사업·북한 인력의 제3국 진출 등과

북한도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래 경직된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남북 경험이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남북 경험과 관련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컨대, 공동 조성 사업·북한 인력의 제3국 진출 등과 같은 사업은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은 일방적인 남한 당국 배제 원칙의 자세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은 남북 경험이 실질적으로 발전하여 북한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재 치중된 간접 교역 방식인 위탁 가공 교역보다는 남북한 직접 교역을 통한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같은 사업은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은 일방적인 남한 당국 배제 원칙의 자세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기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도 당국자간 책임있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에서 북한의 자세 변화가 요청된다.

둘째, 북한은 남한의 대북 투자에 있어 간접 교역 방식을 선호하여 위탁 가공 교역 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남북 경험이 실질적으로 발전하여 북한 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남북한의 직접 교역을 통한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간접 교역 방식에 치중된 남북 교역은 남북간 직접 왕래를 제한하고, 남한 기업과 기업인의 방북 및 대북 투자에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됨으로써 과도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대북

셋째, 북한이 대북 투자의 적극적 장려를 위해 제정한 외국인 투자 법제 및 대외 경제 법제는 현실적 경제난 타개와 체제 강화의 정책적 목표 하에 제한적 범위의 경제 개방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기서 북한에는 남북 경협이 필요성과 유용성이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남북 경협을 위한 법제 준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법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리 추구하고 실용성이라는 경제 원리에도 적합하지 않은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한에서 1998년 4월 '대북 투자 규모 제한 폐지'를 통해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다양한 대규모의 대북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외국인 투자 법제 및 대외 경제 법제를 마련하여 대북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북한 법제는 현실적인 경제난을 타개하여 체제를 강화해나간다는 정책적 목표 하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 개방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북한에는 남북 경협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남북 경협을 위한 법제 준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법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궁극적으로 남북 경협에 있어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 남 북한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남북 경협은 현실적으로 남한

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에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아가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나감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의 경제 교류 협력 법제의 시사점

남북 경협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 동서독과 중국·대만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구 동서독의 경우, 양독은 정치적으로는 동서간의 냉전적 대립 상태 하에서도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를 위해 1951년 9월 '베를린협정'을 체결하였다. 구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를 위한 최초의 합의인 이 협정은 구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의 법적 기초로서 구 동서독간의 무역을 '내독 관계'의 차원에서 민족 내부간의 교역으로 규정짓고 구

동서독간의 생산품만을 교역 대상으로 하였다. 이 협정에 의한 동서간의 경제적 결속은 양독간의 인적 교류를 위한 '통과사증협정' (1963. 2.7), '통행협정' (1971. 12.17), '여행 및 방문교류협정' (1971. 12.20), '교통조약' (1972. 5.26) 등의 토대가 되었으며, 「동서독기본조약」(1972. 12.11)을 비롯한 정치 문제의 타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다음 중국과 대만의 경우, 중국은 「告臺灣同胞書」(1978. 1.1)를 통해 대외 경제 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대만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우대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대만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1988. 7.3)에서 대만인의 대륙 투자에 관한 투자 환경의 조성과 각종 권익 보장 및 우대 혜택에 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만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관계법」 (1992. 7.30 공포)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를 법제화하여 대만과 중국의 각종 교류에 따른 법적 관계를 규율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 동서독과 중국·대만간의 교류 협력 법제는 우리의 남북 경험을 비롯한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그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구 동서독의 경우 구서독의 경제적 지원은 구동독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무

구 동서독과 중국·대만간의 교류 협력 법제는 우리의 남북 경험을 비롯한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그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구 동서독의 경우 구서독의 경제적 지원은 구동독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분단 하에서 정치적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독간의 경제 교류는 분단 극복과 실질적 통일 기반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경험도 이러한 실질적인 차원에서 민족의 복지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엇보다 분단 하에서 정치적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독간의 경제 교류는 분단 극복과 실질적 통일 기반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경험도 이러한 실질적인 차원에서 민족의 복지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 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92